

「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1. 30 (수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8. 02. 20(수)

다. 상정일자 : 2008. 02. 21(목) 제14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기술개발과장 백순규)

가. 군내 농업인에게 고가의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여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가의 소득증대 및 영농편의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임대대상(안 제4조)

- 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또는 공동이용조직

○ 임대계약 및 취소(안 제6조)

-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 체결

- 단, 농업용 이외의 사용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 등은 취소

○ 임대료(안 제7조)

- 임대료는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「별표」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

- 임대료는 대여 전 납부, 운반비용, 유류 등은 임차인 부담

○ 임대료의 환불(안 제9조)

-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- 다만 농기계 출고 전 계약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 농기계를 사용하

지 못할 경우에는 환불

○ 임차인의 책임(안 제12조)

-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변상 또는 원상회복
-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·물적 피해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가. 본 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부담 경감을 도모하므로서 이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사항으로,

나.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

- 평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공동이용조직에 대하여 평창군에서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,
 -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
 - 평창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며,
 - 임대료의 감면 및 환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, 임대기간중 발생하는 훼손등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-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타 자치단체 입법사례를 보면 규칙에서 정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, 그러나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산정기준을 명시하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,
- 또한 농기계 임대료는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감가상각비, 자본이자 및 이자의 합계에 임대일수를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였으나, 동 지침을 보면 임대료 적립금을 이용하여 대체농기계를

구입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있음을 감안하여 임대료 징수 및 관리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,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다. 결과적으로,

- 본 조례안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농기계임대사업을 근거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이용률을 높이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으로,
-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1부. 끝.